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국회 통과안내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난 2001년 4월에 입안을 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01.4.27~7.23)를 하게 되었으며, 2001년 11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는 상정되지 못하고, 올해 임시국회 본회의('02.2.28, 16:28)에 상정되어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電力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

● 개정이유

신기술의 지정·보호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설계·감리업자 선정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설계·감리용역계약의 부실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등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전력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주자에게 관련된 신기술의 우선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신기술 지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기술 지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력기술인·설계사·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등록증 대여를 금지

하고, 전력시설물의 부실설계 또는 감리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또는 강화함

- 다. 규개위 권고사항(제61차, '00.9.29)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한 제12조의2(공사감리 특례) 규정은 전기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문감리업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취지, 법개정에 따른 혼란과 관련업계간의 형평성 문제, 위험도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등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 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자의 자격조건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자로 제한하던 대표자제한 규정을 규개위 권고(제53차, '00.5.26)에 따라 폐지함
-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작성·공고토록 하고,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바. 설계·감리용역계약의 부실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에 따른 공제가입이 제도화됨에 따라 현재 전력기술인단체에서 운영해오던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 설계·감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그 등록을 즉시 취소하게 하던 것을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로 하여,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미달시 필요한 보완기

- 간을 주어 관련규정의 합리적 운용과 민원을 해소함
- 아.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의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자.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설계·감리업자 선정 등(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입법예고안 제12조의2(공사감리 특례) 삭제 추진경위-]

- 전교부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규개위는 7차례의 규개위 분과위 및 본회의를 거쳐 제54차(’00.6.9) 본회의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하는 경우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감리업자가 전기공사 감리를 분리·시행하는 경우를 선택사항으로 하여 건축주가 감리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전기공사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축법에서의 공사감리기준을 일부 개정·보완토록 권고”하였으나, 산자부는 전력기술관리법으로 단일화를 요구하고 부동의 함
- 그 이후 전교부는 제54차 규개위 권고사항을 근거로, 건축법개정법률안중 제21조제10항(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을 신설하고 입법예고(’00.8.4)하였으나, 협회는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연대서명(20,382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위·산자위, 국무조정실, 규개위 등에 탄원서를 제출(’00.8.22)하였으며, 산자부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규개위 재심사에서 건축법개정안 제21조제

10항의 특례규정은 삭제기로 하되, 다만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이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반영토록 권고함

- 건축법상의 전기감리에 관한 규정을 인정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건축법에 의한 전기감리의 제반기준은 매우 취약함으로 전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규개위는 아웃소싱 가능 주장)중 전기감리원, 진단장비 등의 등록요건과 전기감리대상, 감리원배치기준 등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수준으로 강화하되, 그 기준은 산자부와 전교부가 협의·조정후 2001년 상반기까지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토록 권고
- ※ 산자부는 장비의 아웃소싱은 가능하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전문기술 인력을 전혀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을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전기안전확보를 위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표명
- 지난 제61차(’00.9.29 재심사)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 일반건축물중 전기설비의 공사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중 발주자가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중 제12조의2(공사감리 특례) 규정을 신설

하여 입법예고('01.7.2)를 하게 됨

☞ **案 제12조의2(공사감리 특례) 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감리는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에 관한 감리원배치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전력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업체간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행자부·정통부·서울시, 전기감리업체·학계 및 전력기술인 등이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동 특례규정의 삭제를 요청함
- 한편 법률안의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입법예고안중 감리원배치기준은 산자부와 건교부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한 제2항이 삭제되고 약간의 문구 수정이 있는 후 국회에 제출됨.

☞ **제12조의2(공사감리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공사감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회원 및 전력기술인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취지, 동일 감리대상에 대하여 2개법 운용에 따른 업무혼란 및 등록기준·벌칙 등의 상이로 인한 관련업체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부각시켜, 제227회 임시국회 본회의('02.2.28)에서 동 특례규정이 삭제됨

- 신·구조문대비표 -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電力技術”이라 함은 電氣事業法 第2條 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力施設物”이라한다)의 計劃·調査·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 유지·補修·運用·관리·安全·診斷 및 檢査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로 造成되는 施設物과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關係施設은 제외한다.</p> <p>2. “電力技術人”이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 技術系와 技能系의 技術資格取得者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_____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_____ _____ _____ _____건설산업기본법 _____</p> <p>2. _____ _____技術資格取得者 _____ _____</p>
---	--

現 行

改 正

3.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第10條(技術基準의 준수) ①第11條 第2項의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시공을 권고하거나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技術基準의 遵守) ①제11조 제1항 및

定에 의한 設計士는 電力施設物의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設計하여야 한다.

- ② 監理員은 設計圖書·關聯規程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를하여야 한다.

第11條(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의 작성 등)

- ① (생략)
- ②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一般用電氣設備의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와 自家用電氣設備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補修工事に 필요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 技術系의 技術資格取得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작성할 수 있다.

- ③ ~ ⑤(생략)

<신 설>

- ⑥(생략)

第12條(工事監理등) ①·②(생략)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設置·補修工事의 범위 및 監理員의 資格·資格證發給·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생략)

<신 설>

- ⑤ (생략)

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등)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제2항의 規定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技術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②-----設計圖書 및 技術基準

第11條(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의 작성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동법 제2조제17호의 規定에 의한 자가용전
기설비-----

-----技術資格取得者-----

- ③ ~ ⑤(현행과 같음)

- ⑥ 제2항의 規定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자
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第12條(工事監理등) ①·②(현행과 같음)

- ③-----
設置·補修工事의 범위, 監理員配置基準-----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2항의 規定에 따라 監理員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
이 발급하는 監理員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등)

- ①-----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 産業資源部 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2. (생략)

②(생략)

<신설>

③ 設計業 및 監理業의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④(생략)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 技術資格取得者를 代表者로 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申告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市·道知事-----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한 設계업자 또는 監理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設계업 또는 工事監理업을 하게 하거나 登錄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登錄 및 變更 登錄節次 -----

⑤(현행 제4항과 같음)

<삭제>

제14조의2(설계·監理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設계·監理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規定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경영능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設계·監理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設계·監理업자가 設계·監理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第16條(登錄의 取消·營業停止) 産業資源部長 官은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을 取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생략)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3. 設計 또는 監理業務遂行중에 他人에게 人命 또는 財産상의 被害를 끼친 때

4. ~ 6. (생략)
 <신설>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條(登錄의 取消·營業停止) 市·道知事는

1. (현행과 같음)
2. _____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 합병신고가 있을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

현 行 法 律

第17條(休業등의 申告)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신 설>

第23條(監督)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 등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第25條(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6條(手数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数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17條(休業등의 告) _____

_____ 市·道知事 _____

제18조의2(공제사업) ①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제금·공제로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3條(監督) ①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_____

②(현행과 같음)

第25條(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이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市·道知事が _____

第26條(手数料) _____
産業資源部令 또는 市·道の 條例가 _____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現 行	改 正
<p>2. 3. (생 략)</p> <p>4. 第1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u>登錄</u>을 하고자 하는 者</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第2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12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p> <p>2. ~ 6. (생 략)</p> <p>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2. 3. (현행과 같음)</p> <p>4. ----- -----<u>登錄 또는 變更登錄</u>-----</p> <p>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u>를 하고자 하는 자</p> <p>제27조의2(벌칙)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27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第28條(罰則)----- ----- -----</p> <p>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p> <p>2. ~ 6. (현행과 같음)</p> <p>第29條(罰則)----- ----- -----</p>

現 行

改 正

<신 설>

1. ~ 3. (생 략)

4. 第11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用役을 發注한 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신 설>

第30條(過怠料) ①(생 략)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 4. (현행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삭 제>

4의2.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4의3.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4의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4의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5.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兩罰規定)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3·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0條(過怠料) ①(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市·道知事가_____

③ _____
_____市·道知事_____

④ _____
_____市·道知事는 _____

채없이 管轄法院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중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 刑을 科한다.

<신 설>

⑤

地方稅滯納處分

<삭 제>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